

인천지방법원 2024. 11. 5 선고 2024가단9654 판결 [전세보증금반환청구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1. 주식회사 B

2. C

변 론 종 결 2024. 10. 22.

판 결 선 고 2024. 11. 5.

주 문

-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. 7. 3.부터 2024. 10. 8.까지는 연 5%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-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-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공시송달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박진영

별지